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제1차 개정판
(2026. 10.)



보건복지부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제1차 개정판
(2026. 10)

문서명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판	제1차 개정판(초판 2026. 8. 발행, 개정판 2026. 10. 개정)
발행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본 가이드라인은 진료지원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며, 향후 관련 전문학회 및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개정 이력

판	개정일	구분	해당 항목	주요 내용	근거
초판	2026. 8.	제정	전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2026. 8. 11.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수행 행위 Q&A 최초 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제1차 개정판	2026. 10.	신설	P.9 Q3-2	신생아중환자실 수유용 비위관·경구위관(NGT/OGT)의 삽입·교체·제거는 기존 간호업무로서 일반 간호사가 수행 가능함을 명시	대한신생아학회 질의·복지부 확인 (2026.10.13.)

제1장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2.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2

제2장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6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7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8
4. 수술 지원	13
5. 기타 사항	14



제1장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개요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의 정의, 수행범위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간호법」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수행행위가 규정됨
 - 진료지원업무 세부행위는 환자 평가·기록·처방 지원부터 침습적 시술, 수술 지원, 체외순환 관련 업무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함
 - 각 행위는 침습도, 환자 위험도, 진료과의 의학적 판단 개입 여부 및 의료기관 인프라 등에 따라 수행 여건과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음
- 일부 행위는 프로토콜의 존재만으로 수행 범위, 안전성 및 책임의 경계를 충분히 명확히 하기 어려워 세부행위별 정의와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나.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진료지원행위 세부사항 정의, 수행 범위 및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진료지원업무 세부행위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행위별 수행 기준 및 유의사항 제시
 - 의료현장의 업무 수행 기준 일관성 제고
 - 진료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한 환자안전 확보

- 본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됨
 - 운영 가이드라인: 자격·교육·배치, 운영위원회, 직무기술서, 책임구조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위 가이드라인: 개별 수행행위의 정의, 수행 범위, 유의사항 등 임상 수행에 관한 사항
- ※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1. 나. “고시된 세부행위의 정의, 수행 범위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행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안내함” 참조

2.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가.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간호법」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세부 수행 행위에 적용함
- 진료지원행위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함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요양병원에서는 기타 시술 및 처치 및 수술 지원 관련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개별 행위의 실제 수행 가능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직무기술서에 따름
 -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직무기술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 심의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함

나. 법적 근거

- 「간호법」(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 법률 제20445호)

진료지원업무 관련 조항

제12조(간호사의 업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2026. 7. 10. 제정, 2026. 8. 11. 시행)
 - 「간호법」 제12조제2항, 제14조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관리,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가이드라인 관련 조항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2026. 7. 10. 제정, 2026. 8. 11. 시행)
 -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II

제2장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2조에 따름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 수술 지원
5. 기타 사항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Q: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행위에서 ‘중증환자’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A: 중증환자의 범위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생리학적 불안정성, 인공호흡기·투석 등 장기보조장치 적용 여부, 승압제 등 지속적 약물주입 여부, 의식상태, 검사 필요성, 예상 이송시간 및 이송 중 악화 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이송 위험도 평가도구 또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이송 전 담당 의사가 이송계획과 필요한 동행인력 수준·장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Q: ‘이송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환자의 생리적 불안정성 및 검사 이송 중 위험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 산소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
 -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
 - 승압제·진정제·진통제 등 지속적 약물 주입 중인 경우 등
 - 의식 저하, 급성 신경학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나.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 Q: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는 ‘마취 과정 모니터링’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 A: 마취 과정 모니터링은 마취 담당 의사가 수립한 마취계획과 지도·감독에 따라 수술실에서 마취가 시행되는 동안 환자의 산소화, 환기, 순환, 체온, 의식상태 및 마취 심도 관련 지표 등 정해진 항목을 관찰·기록하고 이상 소견을 즉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취 전 단계(병동·외래에서의 환자 상태 관찰 및 자료수집)와 마취 후 회복실에서의 회복기 환자 관찰 및 시술 목적 진정(내시경실, 중재영상

시술실, 심도자실 등)의 환자 모니터링은 일반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나, 마취 또는 진정의 단계와 깊이, 환자 위험도, 사용 약제, 요구되는 관찰과 판단, 해당 간호사의 교육·역량 및 의료기관의 직무규정 등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가. 진료·기록 초안 작성

나.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다.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라.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 Q: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가 초안으로 작성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A: 초안 작성은 의사의 최종 판단과 확인·승인을 전제로, 이미 확인된 환자 정보, 진료과정, 검사결과 및 의사가 결정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정리·입력하는 행위입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 감별진단, 예후, 인과관계, 치료계획, 검사 선택 또는 처방 내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자와 최종 확인 의사의 성명·시간 및 수정이력이 남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마.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 Q: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진료지원행위에서 프로토콜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 A: “프로토콜”이란 특정 환자군 및 임상상황에 대하여 책임의사가 검사 또는 약물의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적용대상, 적용조건, 제외기준,

허용 항목, 선택기준, 용법·용량·경로·빈도·기간, 중단·보고 및 의사 확인 기준 등을 사전에 구체화한 서면 또는 전산화된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프로토콜 하 처방 초안 작성은 진료기록 또는 처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입력·정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 처방의 최종 확정, 변경 또는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초안 작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

-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 또는 약물의 신규 결정
- 검사 항목의 추가·삭제·변경에 대한 판단
- 약물 용량·종류·투여경로의 임의 변경
- 처방의 최종 확정 또는 승인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가.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 Q: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는 어느 범위까지 진료지원행위에 포함되나요?
- A: 의료용 관은 체액의 배출·감압·투여·유지 또는 기능적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되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관형 의료기기를 말하고, 관련 기구는 관과 직접 연결되어 기능 유지에 필요한 배액선, 배액주머니, 마개, 밸브 등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의 세척·제거·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은 관의 종류별로 세척, 제거, 교체 중 허용되는 행위를 각각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Q: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위관영양)를 위해 시행하는 비위관(NGT)·경구위관(OGT)의 삽입·교체·제거도 '의료용 관 관리'에 해당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경구위관의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교육 과정과 의료기관의 표준 간호절차에 따라 수행되어 온 기존 간호업무(「간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므로, 일반 간호사도 수행가능한 행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수유용 관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의사가 직접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도폐쇄·기관식도루 등 상부 위장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 식도·위 수술 후 등 담당 의사가 삽입·교체 시 별도의 주의를 지시한 경우
- 반복적인 삽입 실패 또는 삽입 중 출혈·무호흡·서맥 등 이상소견이 발생한 경우
- 경유문(transpyloric) 영양관 등 수유용 위관 이외의 관을 삽입·교체하는 경우
- 영상 유도 또는 내시경 하에 삽입·교체하는 경우

- Q: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시 주의/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카테터 종류 및 사양 확인
 - 중심정맥관 위치 확인
 - 관 개통성(patency) 확인
 - 환자 관련 위험요인 확인

○ Q: 중심정맥관 제거 시 주의/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 발생 주의, 중심정맥관 제거 후 정맥관 팁의 손상 여부 확인, 커프가 있는 터널형 중심정맥관 제거 시 커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중심정맥관에서 수액의 혈관의 유출(extravasation)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상처·장루·욕창 관리

○ Q: 복합드레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A: 복합드레싱(composite dressing)이란 카테터·튜브·수술부위 등에서 상처 또는 삽입부 평가, 감염·출혈·삼출물 확인, 의료용 관의 고정과 보호, 무균적 드레싱 적용 등 둘 이상의 임상적 관리가 함께 필요한 드레싱을 말하며, 이는 단일 재질로 이루어진 단순 드레싱과 구별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상처의 감염여부, 환자 중증도 및 위험도, 요구되는 전문성, 해당 간호사의 교육·역량 및 의료기관의 직무규정 등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Q: 흡인드레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A: 흡인드레싱(음압창상치료,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NPWT],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 [VAC])은 상처 부위에 음압을 적용하여 삼출물을 제거하고 조직 치유를 촉진하는 드레싱 방법입니다.

※ 드레싱 과정 중 수술적 변연절제술(Surgical Debridement)이 필요한 환자는 의사가 수행

Q: 흡인드레싱에 3~4단계 욕창드레싱이 포함될 수 있는데, 4단계 욕창드레싱을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다면, 4단계 욕창에 흡인드레싱을 적용하는 경우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수행이 불가능한가요?

- A: 예, 맞습니다. 4단계 욕창 환자에게 흡인드레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 Q: 일반 호흡간호와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처방된 산소의 단순 적용, 통상적인 기도흡인과 관찰 등 기존 간호업무와,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가 정한 목표범위 안에서 호흡치료 또는 장비 설정을 조정하고 반응을 평가하는 진료지원행위로 구분합니다. 의료기관은 수행할 치료와 장비, 조정 가능한 변수와 범위를 직무기술서와 프로토콜에 명시해야 합니다.
- Q: ‘인공호흡기 설정’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인공호흡기 설정은 의사가 정한 치료목표와 프로토콜에 따라 압력, 산소 농도, 양압 등 허용된 변수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환자 반응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기모드와 초기 설정, 프로토콜 밖의 변경, 이탈·발관 여부 및 치료목표의 독자적 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처방에 의한 인공호흡기 단순 설정은 일반간호사도 가능합니다.

라. 침습적 시술 및 처치

- Q: 피하조직의 절개 및 배농의 대상과 제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본 행위는 피부와 피하조직에 국한된 표재성 농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막·근육층 침범, 괴사성 연부조직 감염, 전신패혈증, 주요 신경·혈관·힘줄·관절과 인접한 병변, 영상검사나 수술적 탐색이 필요한 병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면 위험부위, 경부, 서혜부, 회음부, 유방·액와부 등 주요 구조물이 밀집하거나 미용·기능 손상 위험이 큰 부위, 면역저하 또는 조절되지 않는 출혈위험이 있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평가·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Q: 피하조직 I&D 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피하조직의 절개 및 배농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병변의 범위 및 깊이를 사전에 평가하여 피하조직에 국한된 농양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혈관, 신경 등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 위험이 있는 부위에서는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전신 발열,

패혈증 의심 소견, 광범위 연부조직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시행 후 감염 악화, 출혈, 통증 증가 등의 이상 소견 발생 시 즉시 의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 기타 시술 및 처치

- Q: 외상 후 석고붕대(Cast, 통깁스) 행위에서 의사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A: 골절·탈구의 진단, 정복 여부, 고정할 부위와 관절 위치, 석고의 형태·범위 및 추적검사 계획은 의사가 결정합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피부보호, 패딩, 석고 적용과 성형, 건조·고정 및 환자교육을 수행합니다. 독자적인 골절 정복, 치료방향 결정 또는 고정범위 변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Q: 외상 후 부목(Splint, 반깁스) 행위에서 부목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 A: 의사가 손상 부위와 진단에 따라 부목 종류, 적용범위, 관절 위치와 재평가 계획을 결정하고,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는 승인된 방법으로 패딩·성형·고정을 시행합니다. 독자적인 정복, 손상 진단, 부목 종류 또는 관절각도 변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Q: 방광 내 BCG 외의 다른 약물 주입도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가 주입 가능한가요?
 - A: 방광 내에 BCG 외의 다른 약물(항암제, 기타 약물)의 주입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 Q: 개흉심장마사지 보조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의사가 주도하는 소생술에서 미리 정한 팀 역할과 의사의 직접 지시에 따라 기구·물품 준비, 수술시야 확보 지원, 흡인·모니터링·약물·장비 연결 및 기록 등 승인된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범위입니다. 개흉 여부, 절개, 내부 심장마사지 시작·종료 또는 손상·출혈에 대한 독자적 판단과 처치는 포함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실제 허용 범위를 직무기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바. 전문적 시술 및 처치

- Q: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수행이 불가능한가요?
- A: 예, 맞습니다. 진료지원행위 중 4개 행위(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행위 입니다.

4. 수술 지원

가. 수술지원

- Q: 침습적 지원과 비침습적 지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 A: 침습적 지원이란 수술 과정 중 환자의 신체 조직을 직접적으로 침범 하거나, 이미 형성된 수술 시야 또는 체강 내에서 의료기구를 직접 조작하거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특징은 피부·조직 절개 부위와 직접 연관, 체강 내, 수술 시야 내에서의 직접 조작, 출혈·손상 등 합병증 위험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 비침습적 지원이란 수술 과정 중 환자의 신체 조직을 직접 침범하지 않고, 수술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기구·과정 측면에서 제공되는 보조적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비침습적 수술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이나 지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수술 절차 및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해진 역할과 범위 내에서 수술 진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침습적 지원과 비침습적 지원의 범주는 직무기술서에 기술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기타 사항

- Q: 운영위원회가 고시에 정해진 행위보다 수행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고시된 행위의 범위 안에서 환자 특성, 진료과, 수행방법, 위험도 및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나, 고시에 없는 행위를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Q: 전문간호사 한정 행위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의사 입회하에 수행할 수 있나요?
 - A: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입회나 개별 지시는 전문간호사 자격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 가능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한 지침으로서, 의료현장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사항이며 그 자체로 법령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
- 다만, 본 가이드라인이 인용·설명하고 있는 「간호법」,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의 내용은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의 효력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의 권고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함. 특히 전문간호사 전속행위, 기관 종별 수행 제한 및 수행 제외 사항은 고시가 정한 바에 따름
- 본 가이드라인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거나 개별 사안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의 수행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수행 권한은 자격·직무기술서 승인·의사의 지도와 위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름
- 본 가이드라인은 법령·고시의 개정 및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개정됨